

# 실제소유자 확인서(법인/단체 비대면 계좌개설용)



본 확인서는 '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' 제 10 조의 5(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)에 의하여 작성이 요구되는 필수 서식입니다. 작성하신 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거 안전하게 관리됩니다.

## [비대면 계좌개설 시 안내사항]

- 작성자는 "계좌개설 대리인" 입력해 주세요
- 작성자 성명 옆에 (인)에는 싸인이 아닌 인감도장을 찍어 주세요.
- 실제소유자에 "외국인"이 포함된 경우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며, 영업점에 내방하셔야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.

## ■ 실제 소유자 확인 생략

선택	선택(V)	작성인 정보	
'국가·지자체·공공단체·금융회사 및 '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(상장기업)'인 경우	( )	기관명	
		직책	
		성명	(인)

※ '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' 제 4 조의 2 제 1 항 단서의 법인 및 단체 및 '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' 제 159 조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한함

## ■ 실제 소유자 확인

선택		선택(V)
1. 25%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→ 최대 지분 소유자		( )
2. 1 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		
택 1	① 최대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소유자	( )
	② 대표자 또는 임원·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(자연인)가 있을시	( )
	③ ①,②외에 법인·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	( )
3. 2 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→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		( )

## 작성 사항 (실제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최대 4 명까지 기재해야 함)

구분		실제소유자 (1)	실제소유자 (2)	실제소유자 (3)	실제소유자 (4)
성명	(한글)				
	(영문)				
생년월일 (1 번 및 2 번인 경우)					
지분율(%) (1 번 및 2-①인 경우)		%	%	%	%
국적 (외국인일 경우 개설 불가)					

작성인 정보	기관명	
	직책	
	성명	(인)

실명확인	담당	팀장(또는 선임)	센터장
------	----	-----------	-----

년 월 일